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0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후계농업인 등에 대한 농협등 조합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우대 적용 (정점식의원안)	4

I. 개요

1.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10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19.
- (3) 회 부 일 : 2025. 3. 20.

나.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400명에서 2023년 140만 7,60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4만 4,200명에서 2023년 36만 9,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

어가수(해수면 기준) 역시 2014년 58,791가구에서 2023년 41,775가구로 10년 새 28.9%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4년 141,344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4년 44%(62,560명)

에서 2023년 65%(56,762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인식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등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현행법 상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의 육성·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정책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분리과세, 2027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8조의5).

나. 농·어민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분리과세, 2027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9조의3).

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점식위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후계농어업인 등에 대한 농협 등 조합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우대 적용(정점식의원안)

현행	개정안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 ○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대상소득: 조합원·회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 한도: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 비과세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비과세 기한 종료 이후 세율: <u>1년간은 5% 분리과세, 그 이후에는 9% 분리과세</u> 함	□ 후계농어업인 등에 대한 저율과세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현행과 같음) ○ 비과세 기한: (현행과 같음) ○ 비과세 기한 종료 이후 세율: - 일반: (현행과 같음) -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u>: 비과세 기한 종료 이후 <u>1년간은 3% 분리과세, 그 이후에는 5% 분리과세</u> 함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89조의3) ○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대상소득: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조합원·회원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 ○ 한도: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 비과세 기한: <u>2025년 12월 31일까지</u>	□ 후계농어업인 등에 대한 저율과세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현행과 같음) ○ 비과세 기한: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 비과세 기한 종료 이후 세율: <u>1년간은 5%</u> 분리과세, <u>그 이후에는 9%</u> 분리과세 함	○ 비과세 기한 종료 이후 세율: - 일반: (현행과 같음) -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u> : 비과세 기한 종료 이후 <u>1년간은 3%</u> 분리과세, <u>그 이후에는 5%</u> 분리과세 함

* 정점식의원안 2025. 3. 19. 발의(의안번호 9101)

□ 개정안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이 종료된 2026년에는 5% 분리과세, 2027년 이후 9% 분리과세가 예정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더 낮은 세율(2026년에는 3% 분리과세, 2027년 이후에는 5% 분리과세)로 우대 적용하려는 취지임.

‘후계농어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총 영농·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청년농어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¹⁾.

[기간별 현행 특례와 의원안 비교]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간	현 행	개 정 안
~'25.12.31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6.1.1일 ~ '26.12.31일	5% 분리과세	일반: 현행과 같음
		후계농어업인등: 3% 분리과세
'27.1.1일 이후	9% 분리과세	일반: 현행과 같음
		후계농어업인등: 5% 분리과세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농림어가의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를 통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유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농가 경영주는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49만 5천 가구(전체 농가의 50.8%)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33만 2천 가구(33.1%), 50대는 12만 5천 가구(12.9%)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증가(+3.6%)하였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974 (100.0)	5 (0.5)	27 (2.8)	125 (12.9)	322 (33.1)	495 (50.8)
증 감	-25.3	-0.8	-5.7	-16.1	-20.1	17.4
증감률	-2.5	-15.4	-17.3	-11.4	-5.9	3.6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4년 어가 경영주 또한 70세 이상이 1만 7천 가구(전체 어가의

41.9%)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만 5천 가구(37.2%), 50대는 6천 가구(13.8%)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7.4%) 경영주는 증가하였으나 나머지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어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40.9 (100.0)	0.4 (1.0)	2.5 (6.1)	5.7 (13.8)	15.2 (37.2)	17.1 (41.9)
증 감	-0.9	-0.1	-0.2	-0.7	-1.1	1.2
증감률	-2.1	-25.0	-6.7	-10.7	-6.7	7.4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다만, 개정안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의 종료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심사경과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